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6.11.15.(화) 조간 이후	배포	
책임자	금융위 보험과 손주형(02-2100-2960)	담당자	임형준 사무관 (02-2100-2962)	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진태국(02-3145-7460)		김봉균 팀장 (02-3145-7471)	

제 목 :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

◇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

1. 주요 내용

- (현행 규정) 자동차 제조사·판매사(수입차·중고차 제외)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,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·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
 -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(CJ·현대·우리·GS)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*로서 국산차 판매시 그 등록이 취소됨
 - *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,000여명 내외,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,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(14년 기준)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
 -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
- (개정안)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
 - 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

- 다만,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

2. 향후 일정

-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('16.11.15~12.26, 40일간)
-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및 공포(공포 1년후 시행)

		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		